

복지이슈 FOCUS

현상공감 경기복지재단

제08호
2022-08

2022. 06.

장애인 개인예산제! 무엇인가?

이병화 연구위원 (bhlee@ggwf.or.kr)

박지환 연구원 (pjh2985@ggwf.or.kr)

목차

- I. 개인예산제의 논의 배경
- II. 개인예산제의 이념과 개념
- III. 국내·외 개인예산제 동향 및 사례
- IV. 핵심 요소와 과제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연구진

연구책임 |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박지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46 Fax : 031-898-5935 E-mail : bhlee@ggwf.or.kr

■ 본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주요 개념과 사례를 통해 도입을 위한 핵심 요소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본 보고서에서는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개인예산제의 이념과 개념, 국내·외 동향 및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음

■ 개인예산제는 개별유연화에 기반하여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및 통제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임

- 개별유연화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은 각각의 선호가 있고, 자신의 개별적 욕구 충족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
- 개인예산제는 이용자가 주도하는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최우선시하여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예산을 이용자의 욕구 평가에 기반하여 총량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급여의 유형보다는 '유연하고 자기 주도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도의 핵심

■ 국내·외 개인예산제의 주요 특징

- (국외) 대부분 국가에서 장애 유형,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고, 급여 유형과 급여 관리방식은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혼합 이용 가능
- (국외) 급여의 허용범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급여 대부분은 돌봄 제공인력의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개인예산제 취지의 안정적 구현을 위한 지원조직 발달
- (국내)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분야에서도 개별유연화의 기본취지를 반영하여 일부 사업 추진

■ 도입을 위한 핵심 요소와 과제

- 개인, 지역사회, 지자체, 그리고 정부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과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도입을 위한 과제 : 장애인 서비스의 확대와 개별 제도의 개선, 이용자 관여 강화를 통한 이용자 주도성 제고, 개인예산제 급여범위의 확대 기반 마련, 지자체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제공기관 지원 방식 서비스의 유지와 기반 강화

I 개인예산제의 논의 배경

■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인예산제에 관한 관심 증가

- 선거 시기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개인예산제를 돌봄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하여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발표(국민의 힘, 2022)
 - 정부 출범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과제에서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 도입’ 명시(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개인예산제에 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되는 등 개인예산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됨(조성민, 2022a, 2022b)

■ 개인예산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 존재

- 개인예산제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과 통제 권한을 증진함과 동시에 서비스 총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화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상반된 입장 공존
 - 2017년 서울시에서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용역연구를 시행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찬반이 엇갈림
 - 서울지역 장애인소비자연대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높일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시장 논리에 의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장애인의 수급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최석범, 2017)
 - 반대 측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개인예산제 공약에 대해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없고, 급여량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주도성도 없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서비스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매우 허구적인 발상’이며, ‘당사자의 필요와 권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쌓아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인예산제 공약을 비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 개인예산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국외의 선례를 보더라도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서비스 총량의 확보, 제도의 자기주도성 담보 방안, 시장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서비스 제공인력 일자리 질 저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예산제의 주요 개념과 이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를 통해 개인예산제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II 개인예산제¹의 이념과 개념

■ 개인예산제의 이념: 개별유연화

- 개별유연화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소망에 따라 맞추어진 서비스와 그 이용 과정, 이에 대한 지향을 의미함
 - 개별유연화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은 각각의 선호가 있고, 자신의 개별적 욕구 충족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전제함(Carr, 2010)
 - 돌봄과 지원 서비스의 중심에 이용자를 두는 자기 주도적 지원을 강조하며, 서비스 이용 당사자로서의 장애인의 주체성과 선택과 통제 권한, 소비자 주권주의를 지향함
 - 개별유연화의 대세적인 흐름으로의 확산은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자립생활, 지역사회 통합과 이를 추진하는 주체간 연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Roulstone & Hwang, 2015; Pearson et al., 2020)
- 개인예산제는 개별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것으로, 개인예산제에서의 개별유연화는 ‘표피적 개별유연화’와 ‘근본적 개별유연화’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Leadbeater, 2004)
 - 표피적(shallow) 개별유연화는 소비자로서 자유 시장에서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함

1 이하의 내용은 이한나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문을 반영하여 작성

- 근본적(deep) 개별유연화는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사회에 통합되고,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삶의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실현됨(Rummery, 2006).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선택뿐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통제권 획득을 지향함
- 개인예산제가 표피적 개별유연화를 넘어서서 근본적 개별유연화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서비스 총량을 현금(또는 이에 준하는 구매 권한)으로 할당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개인예산제의 개념

- 사적 영역에서 제공하던 돌봄 기능을 공공 영역에서 보장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면서 국가의 돌봄 기능 수행에 대한 관심 증가
 - 1980년대 이후 고령화, 출산율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복지국가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며 선진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돌봄이 공공 정책영역으로 진입함
 -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비판하고 사람중심 접근을 강조한 장애인 운동의 영향과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비용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대안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논의 지속(Glasby, 2013)
- 개인예산제는 이용자가 주도하는 유연한 서비스 이용을 최우선시하여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예산을 이용자의 욕구 평가에 기반하여 총량으로 할당하는 제도임(이한나 외, 2019)
 - 공공은 자원(개인예산)을 할당하고, 민간영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할당된 급여로 민간 시장에서 서비스 구매함(이동석, 2015)
 - 개별 서비스에서 분절적으로 대상자와 급여량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 총량 내에서 각 서비스의 사용량과 사용처,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음(이한나 외, 2019)
 - 돌봄 급여를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개인예산제에 포함되나, 급여의 유형보다는 '유연하고 자기주도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도의 핵심으로, 급여의 유형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개인예산으로 지급한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소득보장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허용된 급여범위 외의 지출이나 저축 등은 불가능함

- 정책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하지는 않으나, 장애인 당사자 조직이 제도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됨
 - 이용자 주도적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논의는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에서 비롯되어 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Duffy, 2021), 돌봄제도에서 노인,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대상에게 개인예산제 적용
 - 국외에서는 노인(Woolham et al., 2018; West and Needham, 2017; Rabiee et al., 2016), 발달장애인(Turnpenny et al., 2021),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Weber et al., 2014)의 개인예산제 이용 성과에 관한 연구 수행
 - 그러나 개인예산제 관련 논의를 제기하고 제도 도입의 주요 집단은 장애인이며, 국내의 선행연구와 (유사)시범사업 또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으로 한정함

▣ 국내·외 개인예산제 동향 및 사례

■ 국외 개인예산제의 도입 배경

- 개인예산제는 현대 복지국가의 관심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폭넓게 호응을 받음
 - 개인예산제의 주요 정책은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개혁과 인권 논의에서 찾을 수 있음 (Needham & Dickinson, 2018)
 -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개혁은 작은 정부를 지향, 공공부문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함
 - 인권 논의는 권리 보장 수준이 낮았던 취약집단의 시민권 실현의 수준과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 각 국가에서 나타나는 개인예산제의 주요 도입 취지의 공통점은 두 가지 정책 기조로 나타나고 있음
 - Glasby(2013)는 북미와 유럽국가의 개인예산제 도입의 주요 동기를 아래 <표 1>과 같이 제시함

〈표 1〉 개인예산제 도입의 주요 동기

국가	주요 도입 동기
잉글랜드	- 폭넓은 정부 아젠다 전략 - 보건 및 사회 돌봄에서의 개별유연화와 선택, 자율성의 증진
벨기에	- 이용자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 확대 - 불필요한 케어홈 입소 예방
프랑스	- 케어홈 부담 경감 -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의 증진
독일	- 현금지급제: 비용 절감 - 개인예산제: 이용자의 선택과 권한 증진, 너싱홈 입소율 감소, 비용 절감
네덜란드	- 시설 입소의 제한과 시장에 대한 자극 - 선택과 통제의 증진
오스트리아	- 자율성, 선택, 시장 주도성의 촉진
미국	- 재택과 지역사회 기반 장기돌봄에 대한 이용자 선택 확대
캐나다	- 재택과 지역사회 기반 생활의 촉진
스웨덴	- 선택, 통제, 개별유연화의 증진

자료 : Glasby, EW. (2013). pp 10-11 수정.

- Pike et al.(2016)은 위에서 나타난 국가의 주요 도입 동기를 크게 i)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증진, ii) 장기적 돌봄 환경에 대한 선택권(지역사회 또는 시설)의 확대, iii) 돌봄 성과의 제고와 iv) 돌봄 비용의 절감이라는 네 가지로 정리
- 이는 민영화를 통해 돌봄시장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돌봄비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공공부문 개혁 논의와 이용자의 자율성과 선택과 통제 권한을 증진하고자 하는 인권 논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마다 개인예산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차이가 있으며, 도입 시기나 이후의 정책 환경에 따라 제도의 형태가 변화함

- (호주) 최근의 예로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6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한 호주 국가장애보험(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은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개혁 논의가 정책 도입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상 초기 집중적 개입을 통해 향후 돌봄 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개인예산제 도입의 명분이 됨
 - 장애인에 대한 재정 투입이 궁극적으로는 공공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NDIS의 도입 논리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나(Needham & Dickinson, 2018), 재정 효율화에 대한 강조로 전담기구의 인력 부족, 욕구 평가에서 예산 할당까지의 긴 대기시간 등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나타남(이한나, 2021)

- (영국)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권리활동이 도입과 확산을 주도하여(Needham & Dickinson, 2018) 자기주도적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나 이용자인 장애인 당사자 지원조직이 발달하였으나, 2010년 이후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사회돌봄에서 수급권의 제한, 급여량의 축소, 본인부담금의 강화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개인예산제는 사회서비스의 보장성 증진,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장기적인 돌봄과 지원(Long-Term Care and Support, LTCS)의 주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수단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됨
 - Duffy(2021)는 복지국가가 당면한 LTCS의 현안으로 접근성, 지속가능성, 노동력과 서비스 품질 문제 등을 제시
 - 접근성: 서비스의 보장성과 관련된 이슈.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사적인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게만 수급권을 부여하거나, 거주시설 중심의 폐쇄적인 돌봄을 제공한 전통적 서비스 모델을 벗어나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지속가능성: LTCS의 전통적인 제공기관 재정 지원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유리한 권력관계를 만들었으며,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불리함.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재정 모델이 필요함
 - 노동력: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인해 양적, 질적으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에 차질이 있었음. 양질의 충분한 인력이 LTCS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견인할 인력 수급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함
 - 서비스 품질: 전통적 서비스의 품질은 제공자에 의해 결정되어 이용자가 품질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서비스의 표준화는 주요한 품질 관리방안이었음. 표준화된 서비스보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의 설계와 품질관리가 필요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혁신과 통합 수준을 높여야 함
 - 이용자 중심 재정모델(user-centred funding)인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통해 공통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Duffy, 2021). 이 같은 기대효과는 이용자를 적극적인 소비자로 보는 개인예산제의 기본적 방향성(시장화의 촉진과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에서 비롯됨

■ 국외 개인예산제 제도 비교

- 개인예산제는 국가마다 제도의 양상이 상이하어, 각 국가의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됨(Pike et al., 2016; 이동석, 2015; 이한나 외, 2019).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개인예산제의 제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 유형,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은 없음

- 대체적으로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신체, 정신적 기능의 저하로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인예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나,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본인 부담금을 부과함. 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이용자가 보험료를 냄
- 노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성인 돌봄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연령 상한을 두지 않으며, 별도의 노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서비스 신청 연령은 65세로 제한하나, 65세 미만 서비스 진입 시 65세를 초과해도 계속 이용 가능함. 아동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또는 하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급여 유형과 급여 관리방식은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혼합 이용 가능

- 대부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급여의 성격에 따라 현물급여 또는 특정 서비스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만 지급하기도 함
- 급여관리 방식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함. Duffy(2021)는 유럽국가 개인예산제의 급여관리방식을 일곱 가지로 정리함

〈표 2〉 개인예산제의 급여 관리 방식

관리방식	내용
자기관리 (self-management)	이용자가 직접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 대부분 의사결정 능력이 확인된 신체장애인이 돌봄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할 때 선택함. 돌봄 제공인력의 인건비 외에도 급여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개인 예산을 지출할 수 있음
가족주도 지원 (family-led support)	이용자의 가족이 예산을 관리함. 이용자가 아동이거나, 가족이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성인 이용자의 경우에 적합함
공동관리 (shared management)	이용자와 지원조직이 공동으로 예산을 관리함. 이용자가 관리의 책임은 줄이고 추가적 지원을 원할 때 적합함
마이크로보드 (microboard)	서비스를 연계 및 조직할 수 있는 트러스트, 기업체, 소규모 지역사회 조직 등에서 예산 관리
개인 서비스 펀드 (individual service fund)	서비스 제공조직이나 동료 지원조직이 개인을 대신하여 예산을 관리함. 자기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돌봄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기관을 통해 고용하기를 원할 때 적합함
위탁서비스 (commissioned service)	재정관리 기구나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함
바우처 (voucher)	이용자는 정해진 품목만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음

자료 : Duffy, S. (2021). pp 51-53.

- 각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환경에 따라 이용할 수 있거나 주로 활성화된 관리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주요 관리방식은 자기관리, 공공관리, 제3자 위탁 관리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자기관리: 이용자(또는 후견인)가 직접 예산을 관리하는 형태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 정산과 행정 절차를 이용자가 직접 수행함. 예산은 이용자가 지정한 분리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됨
 - 공공관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도를 전담하는 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이용자의 예산을 관리함. 서비스 제공기관이 공공기관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비용 정산과 행정 절차는 공공기관이 수행
 - 제3자 위탁 관리: 이용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 제3자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비용 정산과 행정 절차를 수행함
- 급여의 허용범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급여 대부분은 돌봄 제공인력의 인건비로 지출
 - 개인예산은 일반적으로 돌봄,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와 재화(재활보조 기기, 소모품 등) 구매에 지출되며, 국가에 따라 주거 여건 개선, 일시보호나 단기 보호, 문화 여가 등이 인정되기도 함
 - 타법과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의료서비스나 특정 고용서비스, 교육 관련 서비스는 개인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술, 담배 구매, 마약, 도박 등 불법 행위는 금지됨
 - 대부분 국가에서 이용자의 돌봄 제공인력의 직접 고용이 인정되며, 이 경우 이용자는 고용주의 의무(보험 가입, 휴무 제공)를 지게 됨
- 개인예산제 취지의 안정적 구현을 위한 지원조직이 발달
 - 자기관리 방식으로 개인예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특히 장애인을 중심으로 발달

■ 국내 개인예산제 관련 연구 동향

- 국외의 개인예산제를 탐색하고 국내의 도입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옴
 - 국내에서는 2010년경 독일의 개인예산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국외 개인예산제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국내 도입의 의미와 가능성을 검토하거나(원소연, 2010; 유동철, 2012; 이동석·김용득, 2013; 이승기·이성규, 2014; 이동석, 2015; 김진우, 2018; 이한나 외, 2019) 제도 도입의 기반 마련이나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승기, 2016; 김용득 외, 2017; 정희경 외, 2020; 이한나 외, 2021)가 주로 진행됨

-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직접적 목표로 놓지는 않았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급여의 유연하고 자기 주도적인 이용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수행되어 서비스의 개별유연화, 환경적 욕구를 반영한 이용자 욕구의 정량화, 서비스의 단계적 통합을 제안하여 개인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함(조윤화 외, 2016; 이호선 외, 2017)
- 국내 연구는 전반적으로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사회권 실현에 필요한 조건임을 인정하며, 본래의 취지와 괴리되어 장애인의 선택권은 실종되고 시장화만 남는 제도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기주도성 실현을 위한 절차를 면밀하게 마련해야 함을 강조함

■ 국내 장애인 개인예산제 관련 사례

- 민간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공공분야에서도 개별 유연화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여 일부 사업이 추진됨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별유연화서포트서비스’ (윤재영, 2016, 2017)
 - 사람중심지원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복수의 참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 수행
 - 국외에서 활용되는 욕구 평가도구를 적용하여 기능 평가, 지원 목표 설정을 거쳐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할당된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
 - 참여자는 발달장애인의 사람중심지원에 적합한 활동지원인 ‘액티브 서포트’와 사교적 활동, 문화여가 활동 등 이용자의 주관적 욕구에 할당된 예산을 지출함
- 동문장애인복지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김동홍, 2022)
 - 2~30대의 신체 및 발달장애인 36명을 대상으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시
 -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가 아닌, 참여자가 평소 지출하지 못하는 사회적 욕구, 미래를 위한 계획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은 액티브 서포터의 활동을 서비스에 포함
 - 사람 중심의 욕구 평가, 참여자 중심 개별계획 수립, 개인예산제 추진지원단을 통한 승인, 계약서 작성, 참여자 소양 교육, 서포터 및 종사자 교육, 개인예산 배분, 참여자 개인예산 운영, 예산 운영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 평가 등 수행

○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별자립생활지원사업’ (김종훈, 2022)

- 장애인 당사자가 예산지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센터는 소득수준 장애 정도, 참여 욕구와 예산 활용 계획, 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 집행을 지원하며 모니터링 역할 수행
- 「중증장애인 맞춤형 가전제품 지원」-10명의 장애인에게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30만 원 상당의 현물로 지원
- 「일상 변화를 꿈꾸는 장애인 생활비 지원」- 30명의 장애인에게 외식, 여행, 공연, 의류, 미용실 이용 등의 사회생활 비용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
- 「장애인 여행 지원」-10명의 척수장애인에게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 여행비용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

○ 부천시의 ‘행복디자인 사업’ 및 ‘라이프디자인 사업’(이한나 외, 2021)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이용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추진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행복디자인사업’은 요양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한 사업 대상자 중 기존 서비스 메뉴(주거환경개선, 방문진료, 구강보건서비스, 방문의료 등)에 없으나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현물과 서비스를 지역 케어회의를 거쳐 일정 한도 내 지원
-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중 ‘라이프디자인사업’은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공적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를 이용하지 않는 자체 돌봄 대상에게 돌봄메뉴(일상생활지원, 식사영양서비스, 세탁, 방역, 효자손케어, 건강리더, 방문진료, 방문약료, 긴급·틈새돌봄, 이동지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용자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일정 한도 내 지원(부천시, 2020)
- 위 사업들은 개인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 예산을 개인에게 할당하는 개인예산제의 기본 방식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나, 항목화된 서비스 메뉴에는 없는 지원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점에서 개인예산제의 취지와 유사함

■ 국내에서 제안한 개인예산제 이용 모형

- 개인예산제의 이용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욕구 평가-계획 수립-계약-서비스 이용-성과 평가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 설계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음(김용득 외, 2017)

- 신청단계: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단계
 - 쟁점: 접수기관, 신청 자격과 신청 주체(대리인 신청 인정 여부), 신청 방법(비대면 신청 인정 여부) 등
- 욕구 평가 단계: 이용자의 신청 접수하여 욕구를 평가하는 단계
 - 쟁점: 욕구 평가 주체(평가자의 독립성과 평가자 자격), 욕구 평가 도구(표준화된 도구의 사용 여부)와 방법(비대면 평가 인정 여부, 본인 또는 옹호인의 관여 여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
- 계획수립: 평가한 욕구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단계. 할당 예산은 욕구 평가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계획 승인 이후 확정됨
 - 쟁점: 계획수립 주체, 계획 승인 주체
- 이용단계: 이용자가 할당된 급여로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고 정산하는 단계
 - 쟁점: 급여 유형, 급여의 범위, 예산 관리 방식,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 방식, 제공인력 인정 범위, 예산 관리 방식에 따른 정산 주체, 정산 주기 등
- 성과평가 단계: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단계
 - 쟁점: 성과평가 방법, 평가 주체, 품질관리 주체 및 방법 등

○ 김용득 외(2017)는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 모형을 설계하며,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과 서울시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구분하여 이용 모형 제시

- 이용단계를 세분화하여 단계별 쟁점과 쟁점별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그림 1〉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 이용 모형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	이용자	신청주체 (발달장애인) 1차)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후견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2차) 직권신청 (지체장애인) 1차)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2차) 직권신청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등), 우편, 전화, 팩스
		신청자격 (발달장애인)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서울시 추가급여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신청접수기관 (관리기관) 서울시(서울시, 구청)
		신청-결과통지 소요기간 1개월

구분	주체	내용
서비스 자격평가 및 예산 산정	서울시	자격평가 주체기관 서울시 직접
		평가도구 (발달장애인) 장애정도, 서비스 접근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 기준 마련 (지체장애인) 기존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예산산정 방법 (발달장애인) 장애정도 등에 따른 일정 금액 기준 적용 <예시> 자해, 타해성 심각, 기존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그룹 -50만원 경증의 발달장애로 서비스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그룹 -20만원 (지체장애인) 기존 활동지원제도 예산 산정방식 준용, 할당된 서비스량 반영
지원계획 작성	이용자-서울시 지원기관	지원계획 작성방법 (발달장애인) 개인(지원포함)이 작성하거나 지원기관에서 이용자 상담과 동의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 사람중심계획(Person-centred planning) 활용 (지체장애인) 개인(기관 및 개인 지원포함)이 작성
		지원계획 지원기관 및 개인범위 (발달장애인)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기관 (지체장애인)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이용자를 잘 아는 개인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 - 서울시 (서울시, 구청)	계약서 내용 절차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 예산 허용 범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등 포함
		대리인 범위 및 지정방법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리인으로 인정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시범 적용 가능) (지체장애인)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급여 제공	서울시 (서울시, 구청) ↓ 이용자	급여의 형태 체크카드 지급(별도의 전용 계좌 필요)
		급여의 내용 활동보조 비사회서비스(여행, 여가, 체육 문화, 이동, 활동을 위한 가사제품, 편의시설 개조, 안마서비스 등)
		용도·용처 제한 정도 용도·용처 제한 없음 -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 사용 금지 - 사회활동과 미연계된 의식주 품목 사용금지
집행	이용자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혼합(직접고용+기관연계고용)
		활동보조인 단가산정 방법 직접고용의 경우 자율계약 방식, 기관고용의 경우 기존 활동보조 단가 적용
		활동보조인 범위 모든 가족 고용 가능. 단, 가족 활동보조인의 경우 직접고용 불가, 기관 연계 고용만 가능
		계좌관리방법 (정산지원포함) 혼합(직접관리 또는 일정 부분 이용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기관 위탁 관리)
정산	이용자 ↓ 구청	예산집행기간 6개월
		정산기간 매월
		정산의 정도 급여비용 100% 정산
성과관리 및 품질관리	구청-외부 평가기관	성과평가방법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개인별 성과평가(외부평가, 당사자 자기평가)
		품질관리방법 이용자 평가

자료 : 김용득 외, (2017)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pp. 103-105 일부 수정.

- 정희경 외(2020)은 개별지원계획 작성 주체, 돌봄인력 고용 주체, 예산의 정산 주체에 따라 복수의 모델을 제시하고,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용 모형 제시
 - 이용모형은 예산전달 모델, 페이롤 모델, 기관 모델로 구분
 - 예산 전달(fiscal conduit) 모델에서는 이용자가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하며, 예산 정산 담당
 - 페이롤(payroll) 모델은 이용자가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돌봄인력을 직접 고용하나, 예산 정산은 퍼실리테이터 기관(이용자 지원기관)이 담당
 - 기관(Agency) 모델은 이용자 지원기관이 개별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 개인예산 정산을 모두 담당
 -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페이롤 모델 기반으로 설계하여 제안
- 이한나 외(2021)는 개인예산제의 급여범위와 현행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내에서 급여를 운용하는 단기적 개인예산제 이용 모형 제시
 - 장기적으로는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이양 제도 포함) 장애인서비스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비 지원과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급여범위에 포함할 것 제안
 - 개인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거주시설), 수당을 받는 서비스로 '구매'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직업재활시설) 필수서비스로 역시 구매상품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의료비 지원, 의료재활시설)는 개인예산제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됨
 - 단기적으로는 개인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며 상대적으로 개인예산제로의 전환이 용이한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보조기기 교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포함하는 개인예산제 운영 모형을 제안함

〈그림 2〉 개인예산제 이용모형(안)

구분	내용		
신청	신청자격	- 만 65세 미만 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거주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30일 초과 입원 중인 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제외	
	신청인	-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 가족 또는 친족, 민법에 따 른 후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욕구 평가	급여량 평가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			
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시군구 사회서비스팀(가칭) 신설 - 이용자 및 가족 또는 옹호인 관여 -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 - 계획 포함 내용: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 개인예산 총 급여량, 서비스 이용 계획, 서비스 이용 방식, 본인부담금(해당되는 경우)	
	계획 심의	- 시군구 개인예산심의위원회(가칭) 신설 및 전담	
↓			
이용	이용 모형	공공관리	- 현행 활동지원제도와 유사 - 시군구가 예탁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에게 지급
		자기관리	- 이용자 또는 이용자가 지명한 사람이 예산을 지급받아 관리 - 서비스 제공기관과 분리된 기관이 비용정산과 행정절차 지원
	급여 범위	-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보조기기 교부,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성과 평가	계획 평가	- 시군구 사회서비스팀	
	전체 사업 평가	- 시도 사회서비스원	

자료 : 이한나 외. (2021). p.230.

○ 개인예산제의 실제 도입과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제기된 운영모형의 보완과 다
양한 환경에서의 실험이 필요함

- 각 운영 모형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지역에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적용한 시범사업 운영이 필요함
 - 이한나 외(2021)는 지역을 가정하지 않고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김용득 외(2017), 정희경(2020)는
서울지역의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모형으로, 전제에 차이가 있음
 - 각 지역마다 주 이용자의 특성,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수급 여건, 이용자 지원기관의 역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운영모형의 실행 가능성을 다양한 환경에서 검토해야 함

- 이용자의 자기주도성을 전 단계에 걸쳐 실현할 수 있는 절차의 구체적 마련이 요구됨
 - 욕구 평가와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지원, 이용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이용을 위한 지원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제안은 구체화되지 않은 수준임. 내실 있는 자기 주도성의 실현과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관여하는 전문적 기관의 권익옹호 역량을 높여내는 것이 필수적임
 - 욕구평가도구의 경우 현행 평가도구(장애인지원종합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독자적 평가도구의 활용을 제안한 경우에도 평가도구는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민간영역의 시범사업에서 활용한 자기 주도적 평가도구의 실험적 사용을 시도해볼 수 있음
- 공공영역의 전문적 역량 제고가 요구됨
 - 제시한 모형에서는 욕구를 평가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예산 산정)을 공공 영역에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은 지원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계획을 승인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역할은 공공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전문성을 높여야 함
- 개인예산의 급여범위와 현행 서비스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함
 - 개인예산제 도입시 현재 바우처나 현물 형태로 제공되는 장애인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공급자 입장에서의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서비스, 현재 공공재정으로 지원하지 않는 민간서비스, 문화바우처 등 장애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개인예산 급여범위에서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세밀한 논의 필요

IV 핵심 요소와 과제

■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와 주체의 과제

- Duffy(2021)는 개인예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과업을 개인 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개인 차원의 과업은 과업의 수행 주체가 개인이라는 의미가 아닌, 해당 쟁점이 작동하는 범위가 개별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개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과제
 - 수급권(clear entitlements): 욕구평가 절차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욕구에 따라 개인에게 할당되는 급여량(예산액), 수급 주기, 욕구 평가의 유효기간과 재평가 시점, 급여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예산 관리 방법, (필요한 경우) 예산 사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예산의 통제 권한(budgetary control): 이용자는 충분한 정보를 고지받고, 할당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용자의 통제 권한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충분해야 함. 의사능력의 제한으로 직접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해야 함
 - 유연한 지원(flexible support): 이용자의 개별특성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급여 유형과 예산 관리 방식을 마련해야 함
 - 통합에 초점(focus on inclusion): 개인예산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하며, 지원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지 이를 고려해야 함. 이용자가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될 경우 이를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지역사회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과제
 - 개별화된 지원(personalised support): 지역사회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할 때, 이용자와 가족, 고용된 제공인력이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관련 주체들의 자조모임 등을 통해 상호 경험 공유와 이를 통한 학습을 촉진해야 함

- 동료지원(peer support): 장애인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자기옹호 기능 증진을 위해 가족과 당사자의 자조모임 조직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이용자와 이들의 가족이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자기관리 방식의 개인예산 이용자를 위해 동료지원을 강화해야 함
- 지역사회기반 지원(community-based support):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대규모 거주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며, 이들이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지역사회에서의 완결성 있는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 형성을 지원해야 함
- 지역의 조정기능(local coordination): 이용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제를 조직하고, 지역 자원간 연계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함

○ 지자체 및 정부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과업

- 인력 개발(workforce development):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훈련 과정에는 인권과 사회 통합, 자립생활의 가치를 핵심으로 포함해야 함. 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가족이 가진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인력이 관련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달체계의 구축(delivery system for personal budgets): 현행 돌봄예산을 총량의 개인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간의 급여량의 불균형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욕구 평가 체계를 개발함.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인예산제가 소득보장, 보건정책 등과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검토함
- 보호와 권익옹호(protection and advocacy): 개인예산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 개인예산제 하에서의 이용자와 관련된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권리 침해시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재정 안정화(funding settlement): 돌봄서비스의 이용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사적 지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함. 공공재정으로 개인에게 욕구 충족에 충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과제

- 상기 제시한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와 과업을 고려하여, 개인예산제의 도입을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이한나 외, 2021)
- 장애인 서비스의 확대와 개별 제도의 개선
 - 충분한 장애인 서비스의 확보는 개인예산제 수립의 기본적 전제이며, 개인예산제 도입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임
 - ‘충분한 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에 근거하여 할당되는 예산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와 서비스 제공량의 충분성을 모두 포괄함
 - 개인에게 할당되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있어도 시장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제한되어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다면, 유연한 이용자 주도적인 개인예산제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음
 - 현재 장애인대상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활동지원은 지자체 추가 급여를 통해 24시간 이용이 보장되고, 수급 불균형이 만성화된 지역이 있으며, 특히 최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에서 기피되는 경우가 많고, 이용할 서비스를 찾기 어려움
 - 개인예산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는 서비스의 양·질적으로 확충이 우선되어야 함
- 이용자 관여 강화를 통한 이용자 주도성 제고
 - 개인예산제의 원칙인 이용자 중심이 서비스 이용의 전 과정에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 필요
 - 개인예산제의 일반적 설계 형태인 유연한 급여범위 외에서도 이용자 주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 원칙을 법령, 사업지침 등에 명문화해야 함
 -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도구를 활용하며, 의사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를 위한 의사결정서비스와 옹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 필요
- 개인예산제 급여범위의 확대 기반 마련
 - 급여범위의 제한은 개인예산제의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 이용자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Forder et al., 2012; Duffy, 2018; Fleming et al., 2019)

-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행 바우처 서비스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바우처간 칸막이를 일부, 또는 전부 제거하여 총량 내에서 자유롭게 급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바우처 이외 서비스(예: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도 개인예산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나 현재 공공재정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사회적 필요가 인정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개인예산의 적용 범위를 확대
-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강점인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거나 법령에 의해 타 제도에서 우선 지원되는 재화와 서비스, 개인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허용

○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욕구를 평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역량이 중요함
- 개인예산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마련하는 데는 당사자를 비롯한 관련 조직들의 건전성, 수행 역할의 포괄 범위와 전문적 역량, 관련 네트워크의 활성화, 이들이 개인예산제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의 보장이 주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임
-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기관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민관협력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조직 내에 고유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의 지원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임

○ 제공기관 지원 방식 서비스의 유지와 기반 강화

- 개인예산제는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의 시장화(민영화)를 촉진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권한은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반영함
- 이용자 선택과 통제 권한의 강화라는 기조 하에 모든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장화의 부작용을 부각할 수 있어, 기존 제공기관 지원방식과의 공존이 바람직함
- 응급서비스, 기본적인 정보 제공, 낮은 수준의 서비스 연계와 조정,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등은 상품의 형태로 매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공자 지원 방식을 유지하며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 국민의 힘. (2022).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 김동홍. (2022).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동문장애인복지관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pp.85-93.
- 김용득, 이동석, 김용진, 박광옥. (2017). 자기주도지원 예산제도도입 타당성 연구. 서울특별시.
- 김종훈. (2022). 장애인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바라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pp.73-79.
- 김진우. (2018). 발달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영국 개인예산제도의 함의와 쟁점. 한국 장애인복지학, 41(41), 111-136.
- 부천시. (2020).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2021년 사업(실행) 계획서.
- 원소연. (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67-289.
- 유동철. (2012). 영국 장애인 직접지불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34), 129-162.
- 윤재영. (2016). 사람중심지원서비스 실천의 성과와 과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CIL+ 사업을 중심으로. pp.1-27. In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6) 사람중심계획과 발달장애 서포트 서비스의 실천, 그리고 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장애인자립생활모델연구·개발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 보고회 자료집.
- 윤재영. (2017). 성공적인 사람중심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들 -서비스의 질을 담아내는 핵심성공지표. pp.29-46. In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공동

- 모금회. (2017) 성공적인 사람중심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들 -서비스의 질을 담아내는 핵심 성공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장애인자립생활모델연구·개발지원사업 3차 연도 성과보고회 자료집.
- 이동석, & 김용득. (2013). 영국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 가능성. 한국장애인복지학, 22, 47-66.
- 이동석. (2015).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에 관한 국가 비교 연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승기, & 이성규. (2014).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35-249.
- 이승기. (2016). 개인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방안 고찰-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7(1), 139-155.
- 이한나, 김윤영, 이민경, 김동기, 김용진, 이정기, 전지혜. (2019).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한나, 하태정, 어유경, 김동기, 신권철, 최복천. (2021). 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호선, 이동석, 김재근, 이경민. (2017). 이용자 선택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유연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성명서]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자의 장애인 정책 공약은 “깡통 다섯 개 선물세트”다. 2022.1.21.
http://sadd.or.kr/index.php?_filter=search&mid=data&search_keyword=%EA%B0%9C%EC%9D%B8%EC%98%88%EC%82%B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6690
- 정희경 외. (2020).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2.5.)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조성민. (2022a). “윤 당선자 장애인 공약 ‘개인예산제’ 첫발... 도입은 시간 문제. 더인디고. 2022.4.1. <https://theindigo.co.kr/archives/31436>
- 조성민. (2022b). “‘개인예산제’ 총괄하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실현 가능할까!” 더인디고. 2022.4.18. <https://theindigo.co.kr/archives/32196>
- 조უნ화, 이동석, 김용진, 김영미, 송기호, 정수연. (2016)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 복지서비스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최석범. (2017). “허점투성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반대” 에이블뉴스. 2017.10.2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Id=0014&NewsCode=001420171024173048552758>
- Carr, S. (2010). Personalisation : a rough guide(revised edition). London :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 Duffy, S. (2021). EU roadmap for user-centred funding for long-term care and support. UNIC project. Brussels:
<https://www.unicproject.eu/publications/>
- Duffy, S. (2018). Self-Directed Support: If it's so good then why is it so hard. Sheffield: Centre for Welfare Reform.
- Fleming, P., McGilloway, S., Hernon, M., Furlong, M., O'Doherty, S., Keogh, F., & Stainton, T. (2019). Individualised funding interventions to improve health and social care outcomes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a mixed-methods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3.
- Forder, J., Jones, K., Glendinning, C., Caiels, J., Welch, E., Baxter, K., ... & Dolan, P. (2012). Evaluation of the personal health budget pilot programme.
- Glasby EW. (2013). Personal Budgets and Health: a review of the evidence. Kent: Centre for health services studies, University of Kent.
- Leadbeater, C. (2004). Personalisation through participation: A new script for public services. Demos.
- Needham, C., & Dickinson, H. (2018). 'Any one of us could be among that number': Comparing the Policy Narratives for Individualized Disability Funding in Australia and England.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2(3), 731-749.
- Pearson, C., Brunner, R., Porter, T. and Watson, N., (2020). Personalisation

- and the Promise of Independent Living: Where Now for Cash, Care and Control for Disability Organisations Across the UK?. *Scandinavi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22(1), pp.285-295.
- Pike, B., O’Nolan, G., & Farragher, L. (2016). Individualised budgeting for social car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 International approaches and evidence on financial sustainability. Health Research Board, Dublin.
- Rabiee, P., Baxter, K., & Glendinning, C. (2016). Supporting choice: Support planning, older people and managed personal budgets. *Journal of Social Work*, 16(4), 453-469.
- Roulstone, A., and S. Kwang Hwang. (2015). “Disabled people, choices and collective organisation: Examining the potential of cooperatives in future social support.” *Disability and Society* 30(6): 849-864
- Rummery, K. (2006). Disabled citizens and social exclusion: the role of direct payments. *Policy & Politics*, 34(4), 633-650.
- Turnpenny, A., Rand, S., Whelton, B., Beadle-Brown, J., & Babaian, J. (2021). Family carers managing personal budgets for adul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or autism.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9(1), 52-61.
- Webber, M., Treacy, S., Carr, S., Clark, M., & Parker, G. (2014).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budgets for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ental Health*, 23(3), 146-155.
- West, K., & Needham, C. (2017). Making it real or sustaining a fantasy? Personal budgets for older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 Woolham, J., Steils, N., Daly, G., & Ritters, K. (2018). The impact of personal budgets on unpaid carers of older people. *Journal of Social Work*, 18(2), 119-141.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2-08

장애인 개인예산제! 무엇인가?

발행일 2022년 6월

발행인 이종돈 대표이사 직무대리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